

무배당 장기요양전환특약(연금형)

약 관

무배당 장기요양전환특약(연금형)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또는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청 당시 무배당 장기요양전환특약(연금형)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는 전환 전 계약 가입당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장기요양전환특약(연금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부가됩니다.(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 계약 또는 특약을 “전환 전 계약”이라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약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계약해당일 :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해당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다. 연금지급개시일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장기요양상태(1~3등급)”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장기요양상태(1~3등급)”라 함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등급판정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및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참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제3조(“장기요양상태(1~3등급)”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 상태(1~3등급)”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약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료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이 변경되어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서 신체장애정도와 정신장애정도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 이내에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⑤ 제4항 제1호의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생존연금
 - 2.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 (1~3등급)”가 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연금 (다만, 장기요양연금은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연금은 보장개시일 이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3등급)”가 되고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3. 피보험자의 생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계약자가 계약자적립액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수익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안에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당일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제3조(“장기요양상태(1~3등급)”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 2. 전환 전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 전환 전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입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해당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은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

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5%)로 적립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m)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18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 (적용대상)

제2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부터 제2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까지는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전환할 때 또는 전환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대리청구인은 제2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을 2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대리청구인을 2명 지정하는 경우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2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전환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

제2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 적립액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8관 기타사항 등

제25조 (전환 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제5조 제1호)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액을 지급[다만, 생존연금은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보증 지급]

(2) 장기요양연금(제5조 제2호)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3등급)”가 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액의 1.0배를 지급(다만, 장기요양연금은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

주)

1. 계약자적립액은 계약해당일부터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의 계산은 매년 연금액 계산당시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도 변동됩니다.
4.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위의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액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나누어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7.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8.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9.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장기요양연금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3등급)”가 되고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지급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1. 생존연금, 장기요양연금 (제5조)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약환급금 (제18조)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24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